

화재원인 조사는 첫 접근방법이 중요해

송재철

〈경찰청 수사연수소 경정〉

화 재의 원인을 단순히 전기, 담배불, 유류, 가스, 방화, 불장난이라 하고 X와 Y를 한 통 속에 섞어서 분류한다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화재현장에서의 전선망울(용융 흔적)로 화인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직접증거로써 역할의 의미이나, 화재현장에서 용융흔의 생성은 동의 용융점과 화재현장의 최고 온도, 통전회로의 1·2차적 합선 등이 필연이므로 1차적인 용흔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화부에서의 용흔이어야 하는 입증의 절차가 중요한 것이지, 용흔이 있으니까 변화부가 되고 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고 있는 것이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이고도 지속적인 화원(火源)이므로 우선은 전기관계자나 거주자,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비치된 도면, 계통도를 확인하거나 방실별(房室別) 용도에 따른 전기의 공급, 공사방식, 사용전선 등과 스위치나 접속구 등 기구의 종류, 사용 상황을 확인하고 발굴작업시에 일치여부를 대조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급전전압이나 화재전 급전상황, 점멸과 전압변동상황,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비

치된 전기 관계자료 등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냉난방설비와 고온밸밸체의 발열·방열여건은 관류, 관통 등의 공급계통 등이 전기와 같이 잠재성 화원으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되는 요인들이다. 전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 안전관리자로서의 전기안전공사나 전기기사 또는 개인적 관리상황, 전기시설 공사자, 전기기계 기구의 제작메이커, 사용자의 책임문제가 거론되어지게 된다.

피해내역 조사에도 대체로 감가상각 등 소방기관, 보험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실사되나 이재관계자들은 사후 복구 과정에서 세무, 보험, 보세품 관련 등 요식상 필요한 서류, 민·형사 관련을 의식해서 피해의 내역을 줄다리기 할 수도 있지만 화인조사에 있어서는 구체적 피해가격 내역보다는 품목(item)에 따른 중요도 가치성 위주로 조사되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다.

보험금 사취목적 방화가능성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손해실사가 있으므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목적의 방화나 이미 살인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 증거물이나 자료를 인멸시키기 위해 방화했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화원부내 집적된 배열물건의 배치상황을 소상히 기억하도록 하고 재

산상 가장 고가인 물건의 종류, 위치, 수량 등의 목록과 추산 피해액을 메모하여 현장 조사시 물건의 존재 여부나 소실 여부 정도 등을 대조 확인하고 소사자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 위치를 옮기더라도 소훼상태, 탄화상태, 화상 또는 부상부위를 촬영하고 부상자의 경우 경위를 조사하므로써 원인을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재관계자의 재산관계, 은행 및 개인간의 부채나 신용관계를 조사하고 화재보험관계 조사에 있어서 사망자가 있을 때는 사망자의 생명보험 가입 여부와 사인도 부검에 의해 규명되어야 하며, 이재관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자의 화재이력, 보험가입경력, 보험의 종류, 목적물, 만기일, 납입액과 납입방식, 화재당시 불입액과 횟수, 중복 또는 초과보험 가입관계 등을 조사하고 보험 가입자나 당해 상점, 회사 등의 영업실적이나 전망 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한, 부채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경영적 문제, 기계, 기구의 리스 관련 문제로써 임대료와 이에 따른 화재보험 가입조건과 문제, 리스된 기계기구류의 리스 이력과 이에 따른 문제점도 조사하게 된다.

이재관계자란 화원 건물과 연소 피해를 입은 주위 건물의 소유자들을 모두 포함한 관계자들을 말하며 중복이나 초과보험 가입의 경우는 가입을 권유했거나 주선한 보험회사원에 대해서도 가입자와의 관계, 권유동기, 보험회사에서의 사전 인지여부 등이 조사되어야 한다.

화재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소방활동에 임하게 되는 소방관들은 사전 도상훈련에서 대상 건물에 대한 구조는 물론 적치물건, 생산물건, 취급물건 등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되고 화재 발생시 접근방법, 이재민 소개나 진압방법 등이 강구될 것이므로 화세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소규모 화재에는 직접 진화가 가능하겠고, 조금이나마 규모가 커진 화재에 있어서는 연소확대를 억제하면서 화세를 압축시켜 일단 초기 진화

후 잔화처리하는 관계로 현장진화를 지휘한 소방관과 관창수 등을 상대로 입장 당시의 화세나 연소상황, 화원충, 방, 실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관창 등의 배치관계 등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화재의 현장은 장소마다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관계로 그 현장에 따르는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이재자, 거주자, 근무자 등의 인적사항, 직업, 경제력 또는 경제수단, 성품, 가족관계, 화재전후의 행적 등도 조사되며, 소적현장은 조그만 외력이나 기상변화로써도 쉽게 변형될 수 있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도 변형되기 쉬우므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전이라도 최초 입장시 촬영전문가로 하여금 되도록 많은 현장 자료들을 촬영하여 화원 건물이나 화원부 또는 발화부 판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고, 사후 현장 기물 등의 이동·변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소훼현장의 피사물은 전부가 흑색일 뿐 아니라 건물 내부나 지하에서는 더욱 어두워서 촬영시 노출 등 조작에 주의해야 한다.

발화부에서의 화재를 분류해 보면 일반적으로 화기(火氣)가 없는 장소에서의 발화와 화원이 상존하는 장소에서의 발화로 대변할 수 있다.

전자는 단락(합선)을 비롯한 누전, 접속불량 등 전기에 기인한 화재, 비화, 자연발화, 방화(농화 포함)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전기 발열기구의 통전방지, 난로, 담배불, 촛불 등 같은 화기의 방치에 의한 발화같은 것을 간단히 들 수 있을 것이다.

화기가 없는 장소에서 발화된 경우라도 발견상황이 천정보다 낮은 곳에서는 화염을 볼 수 없고 천장부에서의 발화가 분명하다면 전기시설에 의한 화재이거나 벽에 접해 축조된 연돌이나 화덕 등에 의한 것도 조사대상이 되고, 바닥이나 저면부에서의 발화가 분명하다면 방화나 자연발화같은 발화 요인들도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⑩